

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586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이재영

피고, 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강오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6. 13. 선고 2021가소176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80,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갑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입찰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표에 기재된 C은 개인이 아니라 상호임을 알 수 있고, A의 이름 옆에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인 D을 공동입찰자로 하는 공동입찰신고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표의 성명란에 C, A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자를 A으로 특정할 수 있다.

나.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표의 주의사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입찰절차 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자의 주소를 입찰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민법 제18조 제2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가 되므로(민법 제18조 제1항),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찰표에 사업장소재지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보아 유효한 주소의 기재로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민경, 판사 이장욱, 판사 이현주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한 문서송부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표 다음 장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